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04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황정아·최민희·진성준
강준현·이주희·권향엽
장종태·김 현·이용우
박 정·이건태·박용갑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발표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2배 이상 늘었음.

경남 창원에서 최근 발생한 중학생 모텔 살인사건 또한 메신저 플랫폼을 통한 익명 채팅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SNS, 메신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또는 유인 등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에서는 메신저, SNS 등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아동 성착취 또는 온라인 유인 정황 등의 발생을 알게

되면 이를 미국 실종·아동착취 방지센터(NCMEC)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관할 수사기관 등에 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있음.

이에 국내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 통합 체계를 신설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가. 제11조의 죄

나. 제11조의2의 죄

다. 제13조제2항의 죄

라. 제14조의 죄

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죄

바. 제15조의2의 죄

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정보통신망”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 성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중 “디지털 성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 및 제2호 중 “디지털 성범죄”를 각각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45조 및 제46조”를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의3”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47조의3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47조의3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는 그 신고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된 사건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는 그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3(신고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면제)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3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7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범죄피해 확산 방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이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과의 정보·자료 공유 등 수사협조체계 구축·운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과 보호·지원 시설의 연계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4항제1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의3”으로 한다.

제67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의2.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의2. (현행과 같음)</p> <p><u>6의3.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u></p> <p><u>가. 제11조의 죄</u></p> <p><u>나. 제11조의2의 죄</u></p> <p><u>다. 제13조제2항의 죄</u></p> <p><u>라. 제14조의 죄</u></p> <p><u>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죄</u></p> <p><u>바. 제15조의2의 죄</u></p> <p><u>사. 아동·청소년에 대한</u></p>

7. ~ 9. (생략)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생략)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4. (생략)

② · ③ (생략)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7. ~ 9. (현행과 같음)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정보통신망-----

3.·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

1. ~ 3. (현행과 같음)

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
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4. (생략)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생략)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
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④ (생략)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
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
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2. -----
-----아동·청
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3. 4. (현행과 같음)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의
3-----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
음)

<삭 제>

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4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47조의3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47조의3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

고를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는 그 신고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된 사건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는 그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3(신고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 다른 법률에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
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
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4조의4(아동·청소년대상 성

<신 설>

범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면제)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3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7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범죄피해확산 방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이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과의 정보·자료 공유 등 수사협조체계 구축·운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과 보호·지원 시설의 연계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65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생략)

⑤ (생략)

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제34조의3-----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⑤ (생략)

제6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